

「2025년 반값농자재 지원사업」신청 공고(2차)

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라 2025년 반값농자재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신청 공고합니다.

2025. 8. 1.

보 령 시 장

1. 사업개요

가. 사 업 명: 2025년 반값농자재 지원사업

나. 사업기간: 2025. 8. ~ 12.

다. 사 업 량: 7,355농가 이내

라.. 지원대상: 관내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중에서
경작면적 1천㎡이상 ~ 5천㎡미만 농업인

* 다만, 사업지침에 따른 지원제외 대상은 지원 불가

마. 사 업 비: 1,471,000천 원(시비 735,500, 자담 735,500)

바. 지원내용: 영농자재 구입비의 50% 지원(농가당 최대 10만원 한도)

사. 지원품목: 영농활동에 필요한 영농자재 전 품목

* 다만, 농기계, 면세유, 상토, 무기질비료 등 기존 지원 품목은 제외(중복 방지)

2. 공모대상

- (사업대상자) 관내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중 아래의 조건 모두 충족

- 「농어업경영체법」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
- * 「농업·농촌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
-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작면적 1천㎡이상 ~ 5천㎡미만
- * 다만, 논, 밭 경지면적 중 휴경 및 폐경 필지는 경작면적 산출에서 제외

3. 지원자격 및 요건

- (지원자격) 보령시 관내 주소를 두고 실거주 하는 농업인
 - * 타 시도 또는 타 시·군 관외출입 경작자는 지원 제외
- (지원요건)
 -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이전부터 대상자 확정일까지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농업인
 -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이전부터 대상자 확정일까지 계속하여 농업 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

4. 지원제외대상

- 가.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,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의 배우자
- 나. 지원농가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자
 - * 부부(사실혼 포함) 또는 자녀가 실제 같이 거주하면서 세대를 분리하더라도 1농가만 지원 → 주민등록에 관계없이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는 1농가로 판단
- 다. 사업 신청 직전 연도 ‘*농업외종합소득금액’ 이 3,700만원 이상인 농업인
 - * 다만, 사업 신청 직전 연도 ‘농업외종합소득금액’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전년도 자료를 공통 적용
- 라. 신청년도에 농업경영체 등록이 취소된 농업인 또는 확정일 기준 농업경영체 경작면적이 1천㎡미만이거나 5천㎡이상으로 변경이 발생한 경우

마. 농·축산업의 병행 또는 축산업의 경우 대가축 20두, 중가축 100두, 소가축 500두, 가금 5,000수, 꿀벌 100군 이상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

* ex. 대가축(소.말.노새.당나귀), 중가축(돼지.염소.양), 소가축(토끼,오소리)

바. 농업·축산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신청 전년도에 처분이 확정된 사람 중 대상자 확정일까지 과태료 납부 등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자

* 농지법, 농약관리법, 비료관리법, 친환경농어업법, 농수산물품질관리법,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

사. 본인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자

5. 지원품목

○ (지원품목) 영농활동에 필요한 영농자재 전 품목

- 농업특성 또는 지원여건상 필요한 경우 지원품목 적용이 가능

※ 다만, 농기계, 면세유, 상토, 무기질비료 등 기존 지원 품목은 제외(중복 방지)

〈지원예시〉

분 야 별	지 원 품 목
비 료	유기질비료, 무기질비료, 생장조절제 등
농 약	살균제, 살충제, 제초제, 토양미생물 제제 등
종 자	종자, 묘목, 종구 등
시설자재	점적관수, 관수관비, 차광자재, 농산물 포장재, 농업용필름, 지주대, 보온덮개 등
일반자재	농업경영에 필요한 일반 농기구(삽, 괭이, 호미, 낫 등)

6. 지원범위

○ (지원범위) 관내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

- 경작면적 1천㎡이상 ~ 5천㎡미만 농업인에 한함

- 관내 주소를 두고 관외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중 경작면적 범위 내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은 지원 가능(관내+관외 경작면적 합산)

7. 지원한도

○ (지원금액) 농가당 최대 10만원

- 영농자재 구입 총액이 20만원 초과 시 10만원 한도 지원
- 영농자재 구입 총액이 20만원 미만 시 구입액의 50% 지원

8. 지원신청 접수기간 및 방법

가. 접수기간: 2025. 8. 4.(월) ~ 8. 22.(금)

나. 접수방법: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

- 고령자, 정보취약계층 등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 업무 대행자 등을 통한 대리 작성 신청 가능

* 질병, 사고 등 농가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통장 등을 통한 대리 제출 허용. 단, 대리 제출에 따른 신청서 누락시 구제 불가

다. 제출서류: 지원신청서

* 다만, 담당자 확인필요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, 가족관계증명서 등

9. 추진절차

① 지원사업 신청 공고 ⇒ ② 신청 접수(읍면동) ⇒ ③ 사업 소관 부서에 전달(읍면동) ⇒ ④ 지원대상자 확정(농업기술센터) ⇒ ⑤ 지원 확정명단 개별 통보(읍면동) ⇒ ⑥ 지정 판매업체에 지원대상자 명단 제공 ⇒ ⑦ 지정 판매업체에서 영농자재 구입(농업인) ⇒ ⑧ 보조금 청구.수령.지급(판매업체, 농협시지부)

10. 선정기준 및 결과 통보

가. 선정(확정)기관: 보령시 농업기술센터

나. 선정기준: 사업지침에 따라 선정

- 지원대상자 명단 검증 후 지원대상 확정

다. 결과통보: 지원대상자 확정 결과 개별 통보(읍면동)

11. 지방보조금 지원 및 정산

가. 사업대상자는 구입 희망업체(지정업체)에서 영농자재 구입

나.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이외 자부담금을 판매업체에 우선 납부

* 판매사업자가 농협일 경우에는 영농자재 구입비용 전액 납부 후 보조금 후정산

다. 보조금 지급 및 정산은 보조사업자(농협시지부), 판매업체가 처리

12. 기타

가. 보조사업자는 지방재정법, 지방재정법 시행령, 지방보조금관리기준 (행정자치부 예규) 및 보령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를 숙지하여야 함

나. 지원대상자는 지원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방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 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함.

다. 상세내용은 사업 소관 담당부서 (☎ 930-7624)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1. 2025년 반값농자재 지원사업 추진계획 1부.

2. 2025년 반값농자재 지원사업 신청서(서식) 1부. 끝.